GST상 디지털 지급 토큰의 정의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GST상의 정의는 지급서비스법(Payment Services Act)의 정의보다 좁고, 소득세 가이드의 지급형 토큰 개념보다도 좁습니다. 디지털 토큰은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될 수 있는, 암호기술로 보호되는 가치의 디지털 표현입니다. 이것이 GST상 디지털 지급 토큰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단위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대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어떤 통화로도 표시되지 않아야 하며, 발행인에 의해 어떤 통화에도 연동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가로서의 사용에 실질적인 제한 없이 공중 또는 공중의 일부가 받아들이는 교환수단이거나 그렇게 의도된 것이어야 합니다.[1]

세 가지 제외 사유가 정의를 완성합니다. 화폐는 제외됩니다. DPT라는 이유 외의 다른 이유로 제4부칙(Fourth Schedule) Part I에 따라 면세되는 토큰은 제외됩니다. 이로써 증권형 토큰과 파생상품은 DPT 범주에서 빠지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면세 대상이 됩니다. 특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 교환수단으로서 기능하지 않게 되는 토큰은 제외됩니다. 이로써 유틸리티형 토큰과 상품권 유사 토큰이 빠집니다.[2] 비트코인, 이더, 라이트코인 및 이에 준하는 퍼블릭 체인 자산은 해당합니다. 단일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의 토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토큰	GST 범주	법정화폐와 교환 시 취급
비트코인, 이더, 솔라나	디지털 지급 토큰	면세(고객이 해외 소속이면 영세율)
USDC, USDT, XSGD(통화에 연동)	DPT 아님, 파생상품으로 취급	제4부칙 Part I para 1(j)에 따라 면세
토큰화된 주식 또는 채권	DPT 아님, 증권	금융서비스로서 면세
플랫폼 자체 서비스용 유틸리티형 토큰	DPT 아님, 상품권 유사	서비스 선급금으로서 표준세율
NFT(고유, 대체 불가능)	DPT 아님	등록사업자가 싱가포르 고객에게 공급하면 표준세율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버넌스 토큰	교환수단으로 기능하면 DPT	면세, 분류는 사실관계에 따름
랩드 비트코인(Wrapped Bitcoin)	대체 가능하고 교환수단으로 사용되면 DPT	면세, 분류는 사실관계에 따름

분류는 사실의 문제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투표를 위해 발행된 거버넌스 토큰은 처음에는 정의 밖에 있다가, 거래소에 상장되고 가맹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의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IRAS는 공급 시점의 토큰 설계와 실제 사용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GST 등록 발행인이 자기 토큰의 분류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

1. IRAS, e-Tax Guide *GST: Digital Payment Tokens*, 제3판, 2026년 1월 30일, 제5절(디지털 지급 토큰의 정의: 단위, 대체 가능성, 통화 표시나 연동 없음, 공중이 받아들이는 교환수단).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2. IRAS, e-Tax Guide *GST: Digital Payment Tokens*, 제3판, 2026년 1월 30일, 제5절(제외 사유: 화폐, 다른 사유로 제4부칙 Part I에 따라 면세되는 토큰, 상품권형 토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